개선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경기)공평저축은행

2. 조치일 : 2018. 1. 15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고객확인 업무 미흡

①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필수 입력사항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거래가 처리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, 직원들이 고객 신원사항을 시스템에 철저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

②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 정보가 전산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, 실제 소유자 확인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

(2)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

①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류 등을 개선하고 추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

②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보고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 상품, 거래횟수, 거래금액 및 거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외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고, 주기적으로 보고 및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

(3) 내부통제 운영 미흡

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규정인 「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」 및 「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」의 내용을 특정금융정보법규에 맞게 정비할 필요

②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·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 결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